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06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2
2.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고령자 명시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

다. 회부연월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의3 신설).
-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함(제1항).
-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도·법령 등에 관하여 국기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제2항).
- 실태조사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4항).
-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 등 다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음(제5항).
- 실태조사의 주기·절차·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68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u>제46조의3(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 실태조사)</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현행	개정안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	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u> 이에 <u>협조하여야 한다</u>. 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법령 등에 관하여 국가기관등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제46조의2제3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u> ⑥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절차·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

현행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제4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u>
	<u>의 실시</u>
3. ~ 6. (생략)	4. ~ 7.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46조의2는¹⁾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제67조에서는²⁾ 정보격차의 실태

- 1)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46조의2(장애인·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연차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도사업의 추진 실태

및 해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³⁾ 웹사이트, 모바일앱, 무인정보단말기 등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접근성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46조의3제2항에서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68조제1항제3호에 같은 내용을 중복

2. 데이터의 활용 실태

3.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실태, 관련 교육 및 조치 현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자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말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실태조사

2.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3.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조문 정리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와 정책의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안 제46조의3제2항·제4항 및 안 제6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46조의3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국가기관등”⁴⁾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기관 등으로 대상을 한정함.
- 안 제46조의3제4항은 위탁 관련 내용으로 현행법 제69조에⁵⁾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관련 내용이 일괄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27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표준 등의 관리·유통 및 활용을 위한 체계의 운영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제47조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위원회 및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5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소관 사업관리 전문지원체계의 운영

2. 제15조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3. 제32조에 따른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안 제46조의3제6항은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대상이 “지능정보서비스”로⁶⁾ 되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그 대상을 웹, 모바일 등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대상”을 추가함.

<개정안 대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정의견>

개 정 안	과기정통부 수정의견
제46조의3(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 실태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	제46조의3(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접근성 실태조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u>국가기관등 및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u>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u><삭 제></u>

6) 개정안 제46조의3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 정 안	과기정통부 수정의견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주기·절차·방법 및 결과 공표</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u>3. 제4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u>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⑥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u>대상·주기·절차·방법 및 결과 공표</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u>5. 제46조의3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u>

2.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고령자 명시

가. 개정안 요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⁷⁾ 따른 고령자를 명시함(안 제50조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생략)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u>고령자</u>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4. (생략) ③·④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함)을 시행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근거 법령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⁸⁾	- 장애인 -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 ⁹⁾	- 보호대상아동 - <u>고령자</u>¹⁰⁾ - 결혼이민자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등

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중 고령자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고령자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

-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생 략)
- ③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 ④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6.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 1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